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순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44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발의의원 : 전순애 의원,
김이석 의원, 이상봉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,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)

나.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(안 제17조제2항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청문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 중 “인사청문회를”을 “인사청문을”로, “10일”을 “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”로 한다.

제8조제8항 중 “제14조”를 “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”로, “제15조에 따른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”를 “제15조를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”을 “전문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생 략) ③ 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,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제2조 각 호 해당 직위 소속기관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“소관 상임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다만, 폐회기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. ④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. ⑤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요청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.	제3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청문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. <삭 제> <삭 제>
제7조(요청안의 회부등) ①·② (생 략)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	제7조(요청안의 회부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

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.	---------- 인사청문을 ----------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----------.
제8조(위원의 질의 등) ① ~ ⑦ (생 략)	**제8조(위원의 질의 등)**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준용한다.	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--- 제15조를 ------.
제17조(주의의무) ① (생 략)	**제17조(주의의무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,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.	② ---- 전문위원 ----------.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6.3.5. 일부개정, 2026.7.1. 시행)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(조례)」(2025.7.18. 제정, 2025.7.18. 시행)

제25조(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